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84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박은정 · 박수현 · 이재강
손 술 · 임미애 · 김재원
김영호 · 김동아 · 한창민
정춘생 · 김준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는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일부 대북단체들이 이와 같은 입법 공백을 이용하여 2kg 미만의 대북전단 등을 기구류 외부에 매달아 살포하려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의 기구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기구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류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북전단의 무분별한 살포행위를

방지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평온을 지키고자 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6조제3항제5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경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구류 외부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에 상관없이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6조제3항제5호 중 “제127조제3항을”을 “제127조제3항·제5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경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구류 외부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에 상관없이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u>
제166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u>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 6. · 7. (생략)	제16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127조제3항 · 제5항을</u> ----- ----- ----- ----- ----- 6. · 7.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